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활용사실 등의 중요정보 표시·광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35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공지능 활용사실 등 중요정보 표시·광고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5.
3. 회 부 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

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 활용사실 등 중요정보 표시·광고

☐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등의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등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를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2. -----

현행	개정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② ~ ⑤ (생략)	-----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등의 이미지가 소비자</u> <u>자로 하여금 상품등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u> <u>높은 경우</u>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¹⁾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광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광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광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광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①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또는 ②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함)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²⁾를 통해 분야별(유전자변형물질, 상품권, 소비자안전 등 3개) 및 업종별(건강기능식품, 완구, 건축물분양 등 23개)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정하고, 사업자등이 이를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사업자등이 이를 위반 시에는 현행법 제20조제1항제1호³⁾에 따

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021.12.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52호)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다만, 개정안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현행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다목4)에 규정되어 있는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 8. (생략)
③ ~ ⑤ (생략)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생략)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를 아니하면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에서 중요정
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
하고 있는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이미지에 대한 중요정보
고시 여부 및 구체적인 표시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⁵⁾를 통해 AI 이용자의 오인·혼란을 상당 부분 예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 12. 26. 제정, 2026. 1. 22. 시행예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
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
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육성과 신뢰 확보의 조화를 위해 조항 신설 대신 현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⁶⁾ 적용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생략)

1. (생략)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 나. (생략)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흐트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